

2011년 11월 24일

제21회 임시이사회 회의록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2011년도 제21회 임시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① 회의일시 : 2011년 11월 24일(목), 07:30

② 회의장소 :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클럽

③ 출석임원

- 이사회 의장 : 김 용 근 (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)
- 이 사 : 박 하 영 (서울대학교 산업조선공학부 교수)
김 춘 호 (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)
박 명 현 (주귀뚜라미 대표이사)
박 해 철 (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
신 동 규 (세종대학교 연구산학협력처장)
안 현 실 (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)
이 상 룡 (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)
이 수 철 (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)
이 종 찬 (한국마케팅과학회 이사)
최 승 호 (동신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)
홍 국 선 (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)
※ 재적이사 15명 중 12명 참석
- 감 사 : 박 종 기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)

④ 불참인원

- 이 사 : 정 양 호 (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)
김 상 규 (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)
최 광 숙 (서울신문 논설위원)

⑤ 상정안건(총 7건)

가. 보고안건 : 4건

- 제1호 제20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(안)
- 제2호 2011년도 사회공헌 기본계획 및 추진경과 보고(안)
- 제3호 2011년도 지식경제 중장기 전략(산업기술로드맵) 수립 보고(안)
- 제4호 R&D 3.0 사업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(안)

나. 의결안건 : 3건

- 제1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(안)
- 제2호 직제규정 개정(안)
- 제3호 회계규정 개정(안)

⑥ 소관부서 :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보고안건 제1호 : 제20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최 개요

- 일 시 : 2011. 10. 26(수) 07:30
- 장 소 :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클럽
- 참석자 : 재적이사 15명 중 11명 및 감사

○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

구분	안건명	심의결과
보고안건	제1호 제1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(안)	원안접수
	제2호 2011년도 KIAT 고객만족경영계획(안)	원안접수
	제3호 tech+ 2011 개최추진(안)	원안접수
의결안건	제1호 KIAT 중기 경영목표(안)	원안의결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○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○ 원안접수

□ 보고안건 제2호 : 2011년도 사회공헌 기본계획 및 추진경과
보고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그 간 추진경과를 보고

○ 사회공헌 추진목표 및 실천과제

추진목표	실천과제
양질의 일자리 확충 지원	1.1 이공계 미취업 대졸자 실무능력향상 지원 1.2 지역 기업-인력간 수급 불균형 해소 지원
대외 업무 서비스 개선	2.1 용역 계약업무 투명성 개선 2.2 R&D평가위원 전문성 강화
중소·중견기업 동반 성장 지원	3.1 중소·중견기업 금융 및 사업화역량 강화 3.2 시장수요 중심의 공동 R&D지원 확대 3.3 해외 시장진출 지원
산업기술문화 나눔확산	4.1 소외계층 청소년 산업기술문화 체험 지원 4.2 저소득층 대학생 산업기술문화행사 초청 4.3 소외계층 봉사

○ 사회공헌 실천력 제고 및 활성화 추진 활동

- 사회공헌 실천과제를 부서별 목표관리제(MBO)와 연계
- 개인·단체·동호회 차원의 봉사활동 장려 및 포상
- 임직원 대상 사회공헌 의식함양 교육 실시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고유사업 업무내용 중 사회공헌 성격의 추진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지표를 보완할 필요 있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접수

□ 보고안건 제3호 : 2011년도 지식경제 중장기 전략(산업기술 로드맵) 수립 보고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지식경제 R&D사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전략 수립 및 중소·중견기업의 R&D투자 방향의 참고자료 제공 목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R&D전략의 경과를 보고

○ 추진 절차

- ① 산업환경분석 : 거시환경분석 - 산업동향분석 - 산업가치사슬 분석
- 기술변화 예측 - 산업 보유역량 분석 - 중장기 산업목표 설정
- ② 유망기술 발굴 : 유망기술 발굴 및 유망기술체계도 작성 - 선행 특허분석 - 기술별 성능지표 및 R&D 수준 설정
- ③ 세부 기술개발전략 수립 : 핵심 주력제품군 선정 - 산업원천 기술 선정 - 세부 기술개발전략 도출

○ 수립결과

- 35개 수립범위 중 전반기 25개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
- 시장수요에 기반한 국가 R&D전략 수립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기획 이전 추진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)하여 600건의 민간수요를 기획시 반영
- 25개 산업별 산업·환경 분석을 통해 시장변화 방향에 맞는 중·장기적 개발이 필요한 원천기술개발 전략을 도출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산업기술로드맵의 구체적인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수립의 의미를 제시
- 산업기술로드맵의 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필요
- 산업기술로드맵의 활용도 제고 및 향후 수익창출 기여 등 사회 공헌 차원에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로드맵을 설명한다면 의미 있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접수

□ 보고안건 제4호 : R&D 3.0 사업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개방·융합·창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개방형 tech+형 R&D로 전환하기 위한 R&D 프로그램 혁신체계인 R&D 3.0 사업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

○ 추진 방향 및 전략

- 창의적 R&D : Open Innovation R&D 추진, 산업간·기술간 융합형 R&D 촉진, 인문사회 인력의 적극 활용으로 tech+ R&D 실현
- 목표지향적 R&D : 창의적·도전적 과제 선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, 사업화 전략 및 비즈니스활동 강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,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강화
- 고객지향적 R&D : 참여연구원의 윤리의식 강화, 평가관리 프로세스의 효율화, R&D 평가관리 체계의 일관성 확보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‘창의적·도전적 과제 선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’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화 실패 경험을 ‘우대하는’ 것보다 ‘차별을 하지 않는’ 것이 타당함

③ 논의결론

- 원안접수

□ 의결안건 제1호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에 의거,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에 관한 규정을 변경

○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시 최소 설정기간을 변경(제38조 제1항)

당 초	개 정(안)
<p>제38조(경영목표의 수립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8조(경영목표의 수립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현행유지)</p> <p>② (현행유지)</p>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○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○ 원안의결

□ 의결안건 제2호 : 직제규정 개정(안)

① 안전주요내용

○ 개요

-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, 기관 차원의 정책추진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품소재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

○ 부품소재단의 명칭을 변경(제7조 제1항)

당 초	개 정(안)
<p>제7조(주요조직) ① 진흥원의 주요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기술전략본부</p> <p> 1) 기술전략단</p> <p> 2) 산학협력지원단</p> <p> 3) 기술사업화단</p> <p> 4) <u>부품소재단</u></p> <p> 5) 국제기술협력단</p> <p> 6) 지역산업단</p> <p>2. 경영기획본부</p> <p> 1) 경영전략단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주요조직) ① 진흥원의 주요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기술전략본부</p> <p> 1) 기술전략단</p> <p> 2) 산학협력지원단</p> <p> 3) 기술사업화단</p> <p> 4) <u>소재부품단</u></p> <p> 5) 국제기술협력단</p> <p> 6) 지역산업단</p> <p>2. 경영기획본부</p> <p> 1) 경영전략단</p> <p>② (현행유지)</p>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의결

□ 의결안건 제3호 : 회계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기관과의 계약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, 계약관리자의 업무 일부를 타 부서의 장이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계약관리자의 일부 권한 및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제59조 제2항)

당 초	개 정(안)
<p>제59조(계약관리자) ① 계약관리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② 계약관리자는 진흥원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p>	<p>제59조(계약관리자) ① 계약관리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② 계약관리자는 진흥원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<u>다만, 업무수행상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자의 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○ 개정에 의해 반영하고자 하는 단서조항은 계약관리자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전 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

③ 논의결론

○ 수정의결

당초 개정(안)	수정 개정(안)
<p>제59조(계약관리자) ① 계약관리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② 계약관리자는 진흥원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<u>다만, 업무수행상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자의 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59조(계약관리자) ① 계약관리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된다. <u>다만, 업무수행상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자의 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계약관리자는 진흥원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p>